

미국**법원, 저작권침해는 국가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강병호 (미국 변호사, Juris Doctor)

사인의 저작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저작권침해가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미국 텍사스주 항소법원은 저작권이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판례나 권위적인 학자의 견해도 없다고 판시하며, 저작권침해는 국가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사실 관계

- 전문 사진작가인 원고는 2005년 해 질 녘 휴스턴시의 도시경관을 촬영하기 위해서 헬기와 조종사를 직접 고용하고, 특수 장비를 구비하여 헬기 난간에 매달려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음.
- 원고는 자신의 도시경관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고 사진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자신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음.
- 2015년 원고는 자신의 사진이 주립 휴스턴대학교 경영대학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학교 측에 무단 사용의 중단을 요청하며 \$41,000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음.^{<1>}
- 이에 학교 측은 \$2,500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저

<1> <http://bitly.kr/231iBT>

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하였고, 학교 측은 수정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주 정부의 면책조항(the 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저작권침해 소송으로부터 주립대학교는 면책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2>}

- 그러자, 원고는 2017년 12월 연방법원이 아닌 텍사스주 지방법원(Texas state district court)에 휴스턴대학교를 피고로 저작권 침해소송 대신 사진 저작물의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사안의 경과^{<3>}

- 원심 재판 중 피고는 국가기관의 저작권침해는 공용수용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법원의 사물관할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음.
- 그러자, 피고는 위 쟁점에 대해서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제기하였고 항소법원에서 본 사안의 쟁점을 판단하게 되었음.

항소법원의 판단^{<4>}

- 수정헌법 및 텍사스주 헌법은 국가 공용수용 보상에 대한 객체로서 유체재산권인 부동산과 동산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무체재산권인 저작권이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판시함.

<2> 상동

<3> University of Houston System v. Jim Olive Photography, D/B/A Photolive, Tex. App. (Opinion issued June 11, 2019)

<4> 상동

- 아울러, 국가기관의 저작권침해를 공용수용 보상의 객체로 인정하는 판례나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중간항소를 인용하였음. 특히,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보통법상의 저작권 침해가 공용수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함.^{<5>}

- 하지만, 법원은 본 판결이 국가기관의 저작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침해에 대해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함.
- 한편, 저작권침해 행위는 불법행위법(Tort law)이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텍사스주 불법행위법(Texas Tort Claims Act)에 따르면 주 정부 기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주권면제가 적용되며, 따라서 연방법원에서 이를 사법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평가 및 전망

-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경우와 같이 공공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임.
- 이러한 판결이 국가기관의 사인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내부 규칙 혹은 윤리 규범 등을 통해서 사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참고 자료

<http://bitly.kr/231iBT>

<https://bit.ly/2XMrIq9>(판결문 원본)

<5> Porter v. United States, 473 F.2d 1329, 1337 (1973)

EU

유럽지식재산청과 유럽형사경찰기구, EU 내 지식재산범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2019년 6월 12일 유럽지식재산청과 유럽형사경찰기구는 EU 전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범죄를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인 “2019 지식재산 범죄 위협 평가(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19)”를 발표함. 이번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특정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점점 정교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광고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 문제와 저작권 침해와 범죄조직 간의 연관관계를 조명함.

배경

- 유럽지식재산청(EUIPO)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2015년과 2017년 각각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함.
- EUIPO와 Europol은 기발표된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EU 전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범죄를 분석한 보고서인 “2019 지식재산 범죄 위협 평가(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19)”를 2019년 6월 12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범죄조직의 연관을 비롯하여 EU 내 지식재산범죄의 최신 경향과 영향을 평가한 전략 문서로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전략적이고 기술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016년 위조 상품과 불법복제품은 EU 전체 수출의 6.8%를 차지하며 이는 1210억 유로 규모에 해당하는데 2014년 EU 전체 수출의 5%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수치임.
- EU 시장 내 유통되는 다수의 위조 상품은 EU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역내에서의 위조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포 및 택배를 통한 위조 상품의 배송 증가에 따라 단속기관의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또한 전통적인 사치품 이외에 화장품, 전기 부품, 식료품, 농약, 의약품, 담배, 장난감,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다양한 일상품이 위조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저작권 침해는 특정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터넷 속도의 증가는 불법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을 통한 대용량 파일의 즉각적인 공유와 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줌.
 - 많은 소비자들은 무료라는 점과 손쉬운 이용가능성 때문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에 매력을 느낌.
 - 불법 도서 영화 및 음악 이외에도 불법 복제 게임 역시 소비자들의 검색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불법 게임 복제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 장치가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데 게임 제작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판매됨.
 - 온라인 불법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비트토렌트(BitTorrent) 포털 및 P2P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유통되고 있으며, 사이버 파일 저장소(cyberlocker)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배포 역시 일반적이 되고 있음. 음악의 경우 USB와 SIM 가트를 통해 불법 배포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음악의 경우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이 가장 지배적인 불법 복제 수단임.
- 플랫폼 운영자들은 디지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치하는 광고 중에는 메이저 브랜드의 주류적 광고도 포함됨.

- 전 세계 100대 기업 중 46개의 기업이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IPTV 기술의 오용이나 인터넷을 통한 TV 콘텐츠의 전달이 증가하고 있음.
 - 저작권 침해자들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여 고화질 가입 TV 채널을 여러 국가들에 소재한 데이터 센터들로부터 EU 회원국들의 소비자들에게 제공함. 또한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역내 소비자 네트워크 내에서 악질적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불법 IPTV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가입서비스가 판매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 서버가 소재하는 경우처럼 저작권 침해 범주는 다국적 성질을 가지므로 법집행 당국이 범죄를 감지하기 어려움.
 - 일부 범죄조직은 불법 IPTV 패키지를 배포하는 다양한 국가들에 소재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글로벌 네트워크임. 이들 범죄조직은 영화, TV 시리즈와 스포츠 경기를 불법 스트리밍하기 위하여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도 함.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온라인 불법복제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코더부터 콘텐츠가 물리적으로 소재한 국가 밖의 서버에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우회 수단이 사용되고 있음.
 - 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개인 간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불법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에 대한 링크가 제공됨.
 - 특히 스트리밍 장치의 통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스트리밍 장치가 아닌 스마트 TV와 같은 적법한 기술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

- 2018년 12월 유럽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된 EU 이외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열거한 위조 및 불법복제 리스트(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를 발표함.
 - 해당 리스트는 공개 협의 절차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저작권 보호 콘텐츠,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정리함.
 - 해당 리스트는 운영자, 지역의 법집행당국 및 정부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이들 시장에서의 구매의 위험성에 관하여 EU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유럽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명단을 갱신할 계획임.

평가 및 향후 전망

- 이번 보고서는 EU 전역을 포괄하여 지식재산범죄를 조사한 최초의 보고서로 지식재산범죄와 범죄조직간의 연관 관계를 조명함.
- 이번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제 중대·조직범죄에 대한 EU의 대응책 마련에 제공될 예정이며 향후 EU 회원국들은 장기전략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여 관련 대책을 논의할 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19_IP_Crime_Threat_Assessment_Report/2019_IP_Crime_Threat_Assessment_Report.pdf(보고서 원문)

<https://euipo.europa.eu/ohimportal/news/-/action/view/5180317>

http://www.ippromagazine.com/ippromagazineneews/article.php?article_id=6799

덴마크

덴마크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차단을 명령

김지영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덴마크 법원은 자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에 대하여 차단을 명령하였음. 이때까지의 웹사이트 차단 명령은 영화, 음악 또는 게임에 접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내려졌음.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뉴스 제공 웹사이트를 상대로 차단 명령이 내려졌음. 이는 얼마 전 통과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5조와도 관련이 있는 판결로 보임.

기초사실 및 배경

- 사상 처음으로 덴마크 법원이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차단을 명령하였음. 이번에 차단 대상이 된 ‘The World News’^{<1>}는 제3자 뉴스 웹사이트에서 방대한 수의 뉴스 기사를 전재하는 웹사이트임.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는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인증된’ 뉴스 기사만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십 년간 덴마크는 불법 웹사이트 차단에 대한 시험대가 되어왔음. 처음 이루어진 차단 명령은 지난 2006년 국제 음반 산업 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가 러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불법 MP3 웹사이트, AllofMP3를 상대로 한 차단 명령이었음.

<1> <https://theworldnews.net/>

- 이 후 2008년 세계 최대 비트 토렌트(BitTorrent) 파일 공유 웹사이트, The Pirate Bay를 상대로 국제 음반 산업 협회가 차단을 신청하였고, 덴마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덴마크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The Pirate Bay를 차단한 국가가 되었음. 이후 다른 많은 불법 웹사이트들의 차단이 덴마크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런 웹사이트들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포털사이트이며, 덴마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차단 대상이 되었던 웹사이트가 대부분이었음.

뉴스 제공 웹사이트(news aggregator) 차단 명령

-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이전의 판결과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덴마크 Fredriksberg 법원은 덴마크 최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TDC에게 뉴스 제공 웹사이트인 ‘The World News’의 접근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분권형 가짜 뉴스 대응 플랫폼(decentralized anti-fake news platform)이라고 자신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인증된’ 뉴스를 제공한다고 말함.
 - 그러나 권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웹사이트는 유용한 뉴스 제공 웹사이트로 보여지기 보다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려져있는 기사들을 허락받지 않고 전재하는 웹사이트로 보고 있음.
- 그렇기에 이러한 권리자들의 의견은 불법 저작물에 대응하는 RettighedsAlliancen(The Rights Alliance)^{<2>}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음. RettighedsAlliancen는 과거에도 권리자들을 대변하여 법원에 다수의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차단 명령 요청을 진행한 바 있음.

<2> Rettigheds Alliancen은 시청각, 음악, 출판, 컴퓨터 게임, 사진 및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쳐 100,000 개 이상의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임. (<https://rettighedsalliancen.dk/forside-2/english/>)

- 나아가서,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는 도메인은 파나마에 등록되어 있고, 미국 기업 “World News LLC”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또한 영화, 음악 또는 게임과 같은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덴마크를 포함한 전 세계 뉴스 웹사이트의 기사를 전재하고 있고, 가끔 사진도 포함되어있음.
 -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는 수백만 개의 기사를 보관(archive)하고 있으며, 접속한 이용자들의 지역에 기반하여 맞춤으로 제공됨.
 - 뉴스 기사들은 모두 출처를 밝히고 있지만, 원래 기사를 발행한 웹사이트로 연결시켜주는 포함된 링크가 클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이 사건 웹사이트는 원래 기사를 발행한 웹사이트로 연결을 원하는 다수의 클릭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음.
- 이 사건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에 접근을 못하도록 DNS 차단과 같은^{<3>} 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음.
-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는 차단 명령이 내려진 이 후 관리자들의 요청이 있다면 요청된 기사의 경우 몇 시간 이내에 삭제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자신들은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관리자들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여태까지 자신들은 관리자들로부터 어떠한 삭제 명령도 요청받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RettighedsAlliancen 측은 자신들이 과거에 이미 삭제 요청^{<4>}을 보냈으며, 소송에 관하여도 통지^{<5>}하였지만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음.

<3> DNS 차단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 사이트에 해당되면 해당 주소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의 접속을 막는 방식.

<4> <https://torrentfreak.com/images/Cease-and-desist-letters-redacted.pdf>

<5> <https://torrentfreak.com/images/Case-filed-and-date-of-hearing-redacted.pdf>

결론 및 전망

- RettighedsAlliancen는 이 사건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차단 명령으로 인하여 권리자들의 웹사이트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수익을 가로채가는 불법적인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서 권리자들의 수익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음.
- 덴마크 법원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DSM Directive)의 제15조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정적으로 이 사건 뉴스 웹사이트가 해당 뉴스 기사들의 원 출처 웹사이트로 연결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단 명령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 또한 덴마크 ISP 행동 수칙(ISP Code of Conduct)^{<6>}에 따라 다른 주요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도 비슷한 차단을 실행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유럽 각국 법원에서 뉴스 제공 웹사이트의 차단과 관련된 판결이 나올지 지켜 볼 필요성이 있음.

※ 참고 자료

<https://torrentfreak.com/court-orders-danish-isps-to-block-copyright-infringing-news-site-190621/>

<6> 본 수칙에 가입한 ISP는 ISP의 차단명령과 관계된 판결 또는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해당 사건의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차단을 실행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http://copyrightblog.kluweriplaw.com/2014/10/24/denmark-code-of-conduct-on-website-blocking/>)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학생이 복제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학교와 담당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학생이 수업시간에 발표하기 위해서 타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아무런 이용 제한 없이 공개된 사진을 복제하여 발표 자료에 포함시킨 후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해당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주 정부는 저작권법상 사업자 책임을 그리고 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한 담당 교사는 방해자책임을 진다고 판결함.

사실 관계

- 사진작가가 스페인의 코르도바 시에 있는 로마 다리를 배경으로 한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여행 잡지사에 제공함. 여행 잡지사가 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 독일의 고등학교 학생이 이 사진을 복제하여 스페인어 수업시간에 발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함. 이 사진 아래에는 여행 잡지사의 홈페이지가 사진의 출처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진작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 이 발표 자료는 스페인어 담당 교사에 의해서 지도되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됨.
- 사진작가는 여행 잡지사에게만 이 사진의 이용권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자신의 복제권과 공중전달권(=공중재현권)의 특별한 유형인 공중접근권^{<1>}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주 정부에 대하여 이 사진이 복제되거나 공중에게 접근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400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급심 판결 및 사법재판소 판결

- 1심 법원은 사진작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정부에게 사진의 삭제와 300유로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방해자 책임에 근거하여 사진이 더 이상 복제되거나 공중에게 접근될 수 없도록 하는 원고의 금지(중지)청구권(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함.^{<2>}
-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원고는 계속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주장함.

<1> 이 사안에서 적용된 독일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의 공중재현권(Recht der öffentlichen Wiedergabe)과 이의 특별한 유형인 제19a조의 공중접근권(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은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의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과 공중이용제공권(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과 전송권에 대응하는 개념임. 독일의 공중접근권은 이용제공뿐 아니라 전송까지 포함됨 개념이므로 우리 전송권과 거의 일치함.

<2> LG Hamburg, Urteil vom 22.01.2013 - 310 O 27/2; OLG Hamburg, Urteil vom 03.12.2015 - 5 U 38/13.

- 연방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공중전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를 선결 판결해 달라고 제청함.^{<3>}
 - 제삼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인터넷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복제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정보사회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독일 연방대법원의 입장과는 달리 이 사안에서 공중전달을 부정하는 견해를 밝힘.^{<4>}
- 사법재판소는 사전에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아무런 조치가 되어있지 않는 제삼자의 웹사이트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되어있는 사진을 복사하여 다른 웹사이트에서 공개하는 행위는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함.^{<5>}

연방대법원의 판결

- 연방대법원은 사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에 따라 타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복제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에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공중전달(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제1문)에 해당되지만, 항소심 법원과 같이 피고에게 저작권법상 사업자책임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은 부

<3> BGH, Beschluss vom 23.02.2017 - I ZR 267/15.

ECJ, Opinion of Advocate General of 25 April 2018, Land Nordrhein-Westfalen v Dirk Renckhoff, Case C-161/17, EU:C:2018:279. (저작권 동향 2018년 제6호 참조).

<4> ECJ, Judgement of 7 August 2018, Land Nordrhein-Westfalen v Dirk Renckhoff, Case C-161/17, EU:C:2018:634.

<5> BGH, Urteil vom 10.01.2019 - I ZR 267/15.

정함.^{<6>}

- 원고의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5호)은 아니지만,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에 해당됨(저작권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이전에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을 복제한 행위는 원고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을 침해하였고, 이어서 이 사진을 학교홈 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공중전달권(구체적으로 공중접근권)(제19a조)을 침해함.
 - 공중전달은 ‘전달’행위와 전달행위의 ‘공중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함.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원고가 원래 고려했던 공중이 아닌 ‘새로운 공중’에 해당됨.
- 학교 홈페이지의 사진 게시는 저작권법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피고는 인용권(저작권법 제51조)을 주장할 수 없음. 인용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전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정당화됨. 하지만 이 사안에서 학생이 발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용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 피고는 또한 수업시간에 설명하기 위해 허용되는 공중접근(제52a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7>}을 주장할 수 없음. 수업시간에 설명하기 위한 허용은 특정되고 제한된 수업참가자에게만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6> ECJ, Order of 21 October 2014, BestWater International, C-348/13, not published, EU:C:2014:2315. 임베딩 기능을 사용한 프레임링크는 공중송신이 아니라는 결정. (저작권 동향 2014년 제22호 참조).

<7> 제52a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60a조로 변경됨.

- 피고는 이러한 침해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이 사안에서는 학교의 관리감독기관)로서 책임을 져야 함(저작권법 제99조).
 - 근로자에 의해서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업무로 인하여 위법하게 침해된 경우 사업자는 침해중지책임(저작권법 제97조 제1항)과 저작물 등의 폐기, 철회 및 인도책임(제98조)을 져야 함.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과실과 상관없이 직접 침해자와 별개로 책임을 져야 함. 이러한 책임의 확대는, 권리침해가 사업자의 위험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사업자는 이러한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화됨.
 - 피고에게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은 필요하지 않지만, 이들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이 사안에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교사의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함.
- 해당 학생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교사는 방해자책임을 짐.
 - 배타적 권리의 침해 시 침해자나 참여자가 아니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보호 권리의 침해에 인과적으로 기여한 자는 방해자로 추정될 수 있음. 이 경우 방해자로 추정된 자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사실적 가능성을 가졌던 경우에는 자기책임으로 행위한 제삼자의 행위를 지원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기여로서 인정될 수 있음. 방해자책임은 저작권 침해에 행위자나 참여자로서 청구될 수 없는 제삼자에게 무한정 확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해자 책임은 기대할 수 있는 행위무의 위반을 요건으로 함. 제삼자의 침해행위의 방지는 방해자로 청구될 자의 기대 여부와 범위는 그의 기능과 직무를 고려하고 위법한 침해행위를 직접 행한 자의 자기책임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됨.
 -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담당교사는 자기에게 부여된 점검의무 및 감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 사진이 권리자의 동의없이 이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었고 이것은 담당교사의 교육활동상 의무에 속하고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그에게 기대할 수 있었음. 저작권 침해와 같이 부당한 행

위에 해당되는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게 할 의무는 교사의 직무에 해당됨. 교사는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해야 함.

- 학교가 교육과 관련하여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인터넷이용을 제공하는 경우 학교에서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학생들을 계몽하고, 지도하고 허용된 범위에서 규정의 준수를 감시해야 함.
-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사안에서는 수행되지 않았음. 담당교사가 최종 결정자로서 자신의 점검의무를 준수하였다면 이러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
- 교사에게 침해의 고의가 없어 직접 침해자나 참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음. 피고는 침해를 제거하고 장래에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

평가 및 전망

- 연방대법원은 권리자의 동의로 제삼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복제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중전달에 해당된다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확인하고 있음.
- 학생이 해당 사진이 포함된 발표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주 정부는 저작권법상 사업자 책임을 그리고 담당 교사는 방해자책임을 지게 됨으로 앞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8>}으로 교육목적의 저작권 제한사유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사유가 활용될 것으로 보임.

<8>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4호 참조.

※ 참고 자료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nr=96761&pos=0&anz=1>

<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gh-izr267-15-schule-projekt-foto-urheberrecht-eugh-urteil/>

<https://www.openpr.de/news/1053967/Veroeffentlichung-von-im-Internet-frei-zugaenglichem-Foto-auf-Website-verletzt-Urheberrecht.html>

일본

도쿄지방법원, 모자이크 유무, 저작물의 제목이나 영상 길이의 차이는 동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도쿄지방법원은 원고가 권리를 가진 저작물과 무단 업로드 된 영상의 동일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모자이크의 유무를 제외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목이나 영상의 길이는 그 동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④ 사실 관계

- 원고는 영화, 비디오 영상 제작, 편집 업무,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 2016년 12월 1일 DVD 제작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함.
- 피고는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널리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임.
-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발신자’)가 인터넷상의 웹 사이트에 원고의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 일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이 사건 영상을 구입한 자가 그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에 둠.
 - 달리 말해, 공중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중송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임.
- 이 사건 발신자는 피고로부터 IP 주소를 할당받고 인터넷에 접속해 영상 업로드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공시 관

계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발신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발신자의 업로드로 인해 자신이 권리를 가진 저작물의 송신 가능화권이 침해되었음을 지적하고, 해당 권리 침해에 관한 발신자 정보를 제공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함.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권리 침해 유무

①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저작물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가지는 영화제작자이며, 저작자인 감독은 주식회사 A에 그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함.
- 원고는 이러한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한 자신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승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② 이 사건 발신자의 업로드로 인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가 송신 가능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 원고는 이 사건 영상의 경우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발신자의 업로드로 인해 저작물의 일부가 송신 가능화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영상과 이 사건 저작물은 제목 및 영상의 길이가 다르므로,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송신 가능화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 사건 발신자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원고는 이 사건 발신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발신자의 정

보를 제공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제공받는 것으로 충분하고, 전자메일 주소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메일 주소까지 제공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인 X는 주식회사 A에 대해 그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하고 해당 저작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하여 해당 저작물을 승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라 할 수 있음.
- 이 사건 영상과 이 사건 저작물 일부는 모자이크의 유무라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양자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업로드로 인해 이 사건 저작물의 일부가 송신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영상과 이 사건 저작물의 제목이나 영상의 길이가 다름을 이유로 그 동일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제목 및 영상 길이의 차이를 가지고 동일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음.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발신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제공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발신자가 이사를 한 경우 등에는 전자메일 주소가 발신자를 특정하는 단서가 되므로 전자메일 주소의 제공은 필요 없다고 볼 이유가 없음.
- 위의 판단을 바탕으로 도쿄지방법원은 2019년 4월 17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발신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 참고 자료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581>

중국

화삼천의 그림 청명에서 유래된 디자인 그림을 음식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은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한 행위이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박다현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상해서회법원은 원고의 작품지명도와 창작정도, 작품이 지속되어진 기간 등을 따져보았을 때 피고들이 원고의 작품과 유사한 그림을 음식포장지에 무단으로 쓰는 행위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성명표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피고들의 공동침해가 인정되며 원고에게 7만 위안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사실 관계

- 중국의 동양화 작가 화삼천(华三川)^{<1>}의 부인과 아들은 화삼천 작품의 상속자로 상해심대성차인수시유한공사, 상해심대성식품유한공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며 15만 위안의 손해배상 청구를 함.
- 본안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은 2001년 1월 텐진양류칭그림출판회사의 <화삼천당인시의도(华三川唐人诗意图)> 10페이지에 화삼천이 만든 <청명(清明)>이라는 작품으로, 상해심대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들이 생산하는 음식 청

<1> 화삼천 : 1930-2004, 당대 유명한 동양화 작가로 고전인물화에 능하다고 알려져 있음

단(靑團)^{<2>}의 포장지로 본안의 그림과 유사한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함.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침해 중지와 함께 경제적 손실 15만 위안을 배상 하라고 요구함.

- 피고들은 음식의 포장지는 외주로 맡긴 것으로 상해심대성식품유한공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애초부터 음식(청단)이 나온 시점이 청명절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작하였으며, ‘목동이 행화촌을 가리키고 있다(牧童遙指杏花村)’^{<3>} 문구는 청명절을 대표하는 시구로 포장지의 디자인은 이에 상응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따라서 화삼천의 <청명>그림에 대한 악의적인 표절을 없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는 본안 작품에 대한 설계원고를 증거로 법정에 제출했으나 작품에 관한 창작계약 및 설계사 측의 서면설명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함.

쟁점

- 피고들이 만든 음식포장지의 그림이 화삼천의 그림 <청명>에서 유래된 것인지 여부

법원판결

- 상해서회(徐匯)법원은 본안의 도안은 화삼천의 <청명>과 매우 유사하며, <청명>발표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안 작품에서 디자인이 유래되었다고 판단함. 피고들이 디자인은 외주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2> 피고들이 생산하는 음식은 청단(靑團)으로 청명절에 먹는 떡

<3> 중국 당대시인인 두목(杜牧)이 쓴 <청명>이라는 시 속에 있는 문구로 유명함. 「청명 절기에 어지러이 비가 내리니, 길 가는 나그네의 혼을 끊어 놓는 듯하네. 문득 주막이 어디 있는가 물으니, 목동은 멀리 행화촌을 가리키는구나. (清明时节雨纷纷, 路上行人欲断魂, 借问酒家何处有, 牧童遥指杏花村)」 위 문구를 바탕으로 하여 길가는 나그네와 마을을 가리키는 목동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그림에 표현되고 있음.

때문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작품지명도와 창작정도, 작품이 지속되어진 기간 등을 따져보았을 때, 피고들이 원고의 그림과 유사하게 만들어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인정됨. 따라서 이는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중국:발행권), 성명 표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중국:수정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상해심대성차인수시유한공사가 상해심대성식품유한공사에게 위탁생산하고 판매는 상해심대성차인수시유한공사가 하기 때문에 피고들의 공동침해가 인정되며, 원고에게 7만 위안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평가 및 전망

- 본 사건의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작품의 지명도와 작품의 창작정도, 지속기간 및 피고의 침해행위가 주관적인지 여부를 따져보았다는 점과 더불어 원고의 <청명>이라는 작품이 피고가 음식(청명절에 먹는 청단)을 생산하는데 있어 그만큼의 가치와 역할이 필요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보임.
 - 법원이 피고들의 공동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행위가 영리적 목적을 가진 고의적인 것이며, 본 작품의 가치와는 별개로 원고의 작품 <청명>과 유사하게 그려 포장지로 쓸 정도로 작품과의 연계성이 필수적이어야 했는지 따져보았을 때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됨.

※ 참고 자료

http://www.sohu.com/a/322271704_260616

<http://sh.eastday.com/m/20190622/u1ai12610927.html>

중국**2018년 <중국 온라인음악 상용저작권시장 연구보고>가 발표됨**

백지연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중국 아이루이 컨설팅에서 <중국 온라인음악 상용저작권시장 연구보고>를 발표함. 보고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 음악 시장규모는 188억 3000만 위안(한화 약 3조 2012억 원)으로 집계됨. 2018년의 성장률은 과거 몇 년간의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남.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의 총 수익액에 비해 관련 상용저작권의 시장규모는 큰 차이가 있음. 이는 온라인 음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정책이 기업들에게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중국 온라인음악 업계의 발전 현황

- 중국 온라인음악 시장의 수입은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음반회사, 저작권대리상 등의 주체가 음악 저작권 라이선싱 및 저작권 양도를 통한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중국 내 저작권 운영의 주요 방식으로는 1) 음악 콘텐츠의 온라인 발매, 2) 음악 예능 프로그램 및 공연에 대한 라이선싱, 3) 드라마 및 애니메이션 OST, 4)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이 있음. 2018년 중국 음악저작권 시장의 규모는 188억 3000만 위안(한화 약 3조 2012억 원)으로 집계되었음.
- 2018년 중국 내 B to C 온라인음악 플랫폼의 수입 총액은 76억 3000만 위안(한화 약 1조 297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유료 이용자들이 지불한 금액은 45억 2000만 위안(한화 약 7683억 원)으로 총 수입에 60%를 차지함. 중국의 대형 온라인음악 플랫폼인 QQ음악, 왕이윈음악(网易云音乐) 등은 유료 이용자들을 통한 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광고 및 라이선싱을 통한 수익을 부 수익원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중국 내 B to B 온라인음악 시장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음. 2018년 전에는 중국 정부의 B to B 온라인음악 시장에 대한 규제가 B to C 온라인음악 시장만큼 강하지 않았음. 또한 플랫폼들의 B to B 온라인음악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적극적이지 않았음.

중국 온라인음악 상용저작권 시장 현황

- 첫째 2018년 온라인 음악 관련 상용저작권^{<1>}의 시장규모는 1억 위안(한화 약 169억 원)으로 전체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임. 온라인음악 전체 시장규모와 큰 차이를 보임. 이는 온라인 음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정책이 기업들에게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하지만 “클린 인터넷 2018” 사업 이후 쇼트 클립, 애니메이션 등의 영역에서 콘텐츠제작사의 음악 저작권이 정부의 주의를 끌고 있으며 최근 중국 내 법원의 상용저작권 관련 저작권침해사건의 수리량이 많아지고 있음으로 향후 정부가 상용저작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측됨.
- 둘째 중국 온라인음악 시장은 저작권의 수량과 가치가 이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현재 중국 내 50% 이상의 음악 저작권이 3대 음반회사^{<2>} 이외의 독립 음반사, 개인 음반제작실 및 기타 소형 음반사에 있음. 또한 전체 곡 수량 대비 3대 음악플랫폼^{<3>}에서 재생되는 곡은 20%에 불과하며 80% 이상이 롱테일 마켓^{<4>}에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곡 재생으로 얻는 수입의 60%는 대형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음.

<1> 중국의 문화산업계에서 쓰이는 용어로 저작권 라이선싱의 거래 대상이 일반 이용자인 B to C 형태가 아닌 소비자가 또 다른 기업인 B to B 형태의 시장에서의 저작권을 의미함.

<2> 워너뮤직,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3> QQ음악, 쿠고우음악(酷狗音乐), 쿠위음악(酷我音乐), 왕이윈음악(网易云音乐), 샤미음악(虾米音乐).

<4> 다품종 소량 생산된 비주류 상품이 대중적인 주류 상품을 밀어내고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현상 또는 그러한 시장을 말함.

- 셋째 음악 제작사들의 광고수입이 한정되어 있고 광고주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음악 상용저작권 플랫폼은 음악제작사들과 광고주들을 이어주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
 - V.Fine플랫폼의 경우, 전문적인 운영팀이 B to B 상용 음악저작권 판매, 데이터와 시장 분석을 통해 음악인들의 창작 방향을 제시하며 소재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례로는 2018년 6월 5일에서 7월 15일까지 월드컵 관련 음악은 V.Fine플랫폼의 총 업로드 량의 9%를 차지했으며 총 판매수익은 22%에 달했음.
- 중국 온라인음악 상용저작권 시장의 문제점으로는 넷째, 공개적이고 종합적인 저작권 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며 다섯째, 온라인음악 플랫폼 운영체제 중 음악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수입을 관리하는 체제가 없으며 여섯째, 정부 규제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저작권 가격결정 기준이 없음.

중국 온라인음악 상용저작권의 향후 전망

- eMarketer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온라인 광고 예산규모는 654억 2000만 달러이며 2021년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막대한 예산 중 평균적으로 0.5%에 해당하는 비용이 광고 내 배경음악의 저작권 비용으로 파악됨. 만약 이러한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023년 광고 영역에서 음악저작권의 수입은 약 45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의 온라인음악 상용저작권 거래 플랫폼의 경우 음악제작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음악제작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와 유료로 제공된 상위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 중국에는 상용저작권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은 음악제작자에게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위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해 플랫폼을 활성화 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함.
- 정부차원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조직(즉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이 플랫폼이 세운 한 곡당 및 앨범당 가격책정 기준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

작권신탁관리조직이나 상위 부처에서 음악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그 사례로 한국 정부 산하의 한국문화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전문적인 부서가 음악, 드라마, 소설 등 문화산업 콘텐츠에 대한 일련의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데이터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콘텐츠 관련 투자의 경우 반영되고 있음.

※ 참고 자료

<http://www.ipr.gov.cn/article/gnxw/bq/201906/1937892.html>

http://report.iresearch.cn/report_pdf.aspx?id=3384